

# 러시아 진출과정에서 법인설립 문제의 법률적 쟁점

김 영 옥

(법무법인 미르 러시아변호사, 법학박사)

## I. 들어가는데

## II.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관련 쟁점사항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및 유의사항
2.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3.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4.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과 관련한 법적 쟁점

## III. 글을 맺으며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 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 1. 들어가는글

최근 한·러 무비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시점에서 현지 법인 설립 등 러시아 진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법률적 쟁점 등을 본 논문을 통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외국인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1999년 7월 발효된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 법률(이하 ‘외국인 투자법’<sup>1)</sup>)’은 내·외국인 동등원칙에 따라 외국법인을 포함하여 외국인도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5월 제정된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에 대한 러시아연방법률’<sup>2</sup>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6개 산업 부문의 42개 전략산업은 외국인투자 시 투자지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러시아연방에서 영업활동 수행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 등록은 ‘러시아연방 민법 전’<sup>3</sup>,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sup>3)</sup>에 따라 규율되며,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민법 외에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sup>4)</sup>,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sup>5)</sup> 등을 별도로 참조하여야 한다.

영업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에서 영업활동의 허가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회사의 설립 유한회사, 주식회사(공개형/ 폐쇄형),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 (2)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 개설
- (3) 개인사업자 등록
- (4) 기존 법인의 인수

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No. 160-ФЗ.

2)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Часть первая, No. 51-ФЗ.

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No. 129-ФЗ.

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No. 208-ФЗ.

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No. 14-ФЗ.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대표사무소 및 지점을 개설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새로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조세 효율적이며 합리적인지 등은 진출하는 한국회사의 업종 및 현지 파트너의 유무 등 여러 상황 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형태 및 진출시 고려해야할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관련 쟁점사항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러시아로의 투자 진출 시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설립형태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진출초기단계에서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순수 현지법인 형태의 설립, 한국 모기업의 자회사 형태의 설립, 현지 파트너와 합작회사 형태의 설립 등 적절한 형태를 모색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한국 본사의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주의할 점은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러시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며,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립유형별 간단한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및 유의사항

#### 1) 유한회사의 설립 및 법적 특성

러시아 및 CIS국가에서 현지법인의 형태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유한회사이다.<sup>6)</sup> 러시아의 유한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형태, 특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유한회사 관련 규정은 러시아 민법 전 제1부에 통칙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별도로 '러

6)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на период до 2008г. <http://www.economy.gov.ru>

시아 연방 유한회사 법(1998년 1월28일 연방회의 승인, 2012년 12월 29일 최종개정)<sup>7)</sup>이 존재한다. 유한회사 법에는 유한회사의 법적 지위, 사원들의 권리 및 의무, 회사의 설립절차, 조직변경, 청산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 보험, 비영리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러시아연방 유한회사법 제2조 통칙에 따라 회사는 법인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sup>7)</sup>,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존속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원이 50인 미만일 경우 설립 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정관 및 설립계약서에 명시된 자본금의 출자 비율만큼 지분을 가지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유한책임을 진다는 특성이 있다. 출자비율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정관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변경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간혹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출자자를 모두 '주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사용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하면서 출자한 자를 '주주'(Акционер)라 하고, 유한회사에서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한 자는 '사원'(Участник)이라 하여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유한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① 회사의 상호 및 약칭상호
- ② 회사의 소재지
- ③ 기관의 구성 및 권한
- ④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및 의결정족수
- ⑤ 자본의 총액
- ⑥ 각 사원의 출자좌수, 1좌의 금액
- ⑦ 사원의 권리와 의무 및 퇴사절차
- ⑧ 지분양도 절차
- ⑨ 보관해야 할 문서의 범위 및 기한
- ⑩ 열람이 허용되는 문서의 범위와 그 절차

7) 유한회사법 제2조 제3항.

정관과 더불어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설립계약서(사원간 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2008년 12월 기존의 유한회사 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원이 2인 이상일 경우라도 반드시 설립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실무에서는 설립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관공서도 있다. 참고로 유한회사의 설립계약서에는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출자금 납입 기한 및 절차, 출자의무 위반에 따른 사원의 책임, 기관의 구성과 권한, 의결에 관한 사항, 사원의 퇴사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자본 납입과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특이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 등기 이전에 은행에 자본금 납입 목적으로 임시계좌를 열어 자본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액이 납입되어야 한다. 다만 전액이 납입되어야 하는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2) 유한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적 쟁점

러시아 법령상 유한회사는 필수기관으로 사원총회와 업무집행 기관을 두어야 한다. 사원총회는 사원들로 구성되는 유한회사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사원들은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토의하며, 결의 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사원총회에서 사원은 그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사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회사 설립문서, 정관의 규정 또는 회사 기관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유한회사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해지는데 특히 사원총회의 배타적 의결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배타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의 주요 활동방향 설정, 협회 및 기타 영리조직연합체에 대한 가입결정
- ② 자본 총액의 변경, 정관의 개정
- ③ 회사 설립문서의 변경
- ④ 집행기관 선임 및 해임,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단독집행기관의 권한 양도에 관한 결의(외부경영인 선정 결의), 외부경영인과 계약조건결정
- ⑤ 감사위원회의 구성(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⑥ 감사보고서 및 연차 대차대조표 승인
- ⑦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
- ⑧ 회사 규칙의 승인 및 확정

- ⑨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결의
- ⑩ 조직변경 또는 청산에 관한 결의
- ⑪ 감사보고서의 승인, 감사의 선임, 감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
- ⑫ 청산위원회의 구성, 청산 대차대조표 승인
- ⑬ 기타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원총회는 유한회사 법상 배타적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결의 권한을 이사회나 업무 집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또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사원의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며 사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이외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외부경영관리인을 둘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현지법인 또는 현지인과 합작투자법을 설립할 경우 유한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지인과의 지분을 50/50으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현지 파트너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사원총회에서 사원 간 협의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사원 간 회사 운영 현안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중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와 50/50, 51/49 등의 합작법을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한회사 법 상의 지배구조, 사원총회의 권한,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의 권한 등을 항상 염두 해 두고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사회(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의 설치도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나 현지 진출 경험이 많지 않고 현지 파트너의 도움은 필요한 경우, 가급적이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우리측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75%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원이 2명인 경우보다는 우리쪽에 우호적인 3-4명의 사원을 두고 지분을 분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현지파트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기타 유한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

러시아연방 유한회사법은 1998년 제정된 후 약 10여 년 동안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었으나, 2008년 12월 30일 유한회사법 총 59개 조문 중 36개 조문이 개정되었다. 동 유한회사법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까지 러시아연방에 설립된 모든 유한회사는 동 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 등기하였다.

〈표 1〉 2008년 12월 개정된 유한회사법

	변경 전	변경 후
설립문서	설립계약서 및 정관	정관
지분양도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가능	정관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지분양도 가능, 공증
이사회권한 (조문 추가)		권한 강화
최저자본금	법정 최저 임금의 100배	10,000루블 이상
사원명부 추가		사원명부와 보유지분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 및 등기
사원탈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탈퇴 가능	사원탈퇴 제한 가능

유한회사는 1인(단독사원에 의한 설립) 또는 복수의 개인, 법인에 의해 설립되며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개정 전 유한회사 법에서는 반드시 설립계약서(사원간 협약서)를 작성하고 설립계약서에 사원간의 지분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개정된 유한회사 법에 따르면 설립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정관만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아직도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설립계약서 작성이 요구되어 진다. 예를 들면 러시아 지역 세무서에 현지법인 설립신고를 하거나 지사 개설을 신고할 경우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설립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필요서류 목록에 명시하고 있어<sup>8)</sup> 법인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러시아 유한회사법 제10조에는 “사원 제명”<sup>9)</sup>과 관련한 조문을 두고 있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 동 조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러시아연방에 직접투자 시에 2000년 대 초반까지 가장 문제가 된 사항이기도 하다.<sup>10)</sup> 즉 외국인투자자가 러시아 현지인(또는 법인)과 합작 투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75%이상의 절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라 하여도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현지인이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8) [http://nalog.ru/rn77/yul/interest/reg\\_yl/](http://nalog.ru/rn77/yul/interest/reg_yl/) 참조.

9) 러시아연방 유한회사법 제10조 : 회사 자본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원들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작위(부작위)로 회사의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한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0) Молотников А.Е., Закон и бизнес, ООО Питер Пресс, 2008, p.26~28.

2008년 12월 유한회사법을 개정하면서 동 조문의 폐지가 화두에 올랐으나, 소수지분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법원에서 동 조문을 인용하여 현지인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 주는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 2.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주식회사 종류의 구별이 없는 한국법과는 달리, 러시아법의 주식회사에는 공개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 두 종류가 있다. 공개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의 주식회사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며, 폐쇄형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사원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인 주주의 회사설립도 가능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주식의 범위 내에서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러시아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은 공개회사의 경우 회사 및 주주는 회사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반면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의 양도를 원하는 다른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주의 권리이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주식취득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러시아연방 독점규제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관계인<sup>11)</sup>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자기거래가 금지된다.

## 3.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외국인투자자가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업종과 규모, 시기 등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설립의 기본적인 목적이 본사

11) 특수관계인: 기업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독점규제법 제4조) 즉, ① 회사의 이사회 또는 합의제 집행기관의 구성원이거나 단독집행기관인 자, 특수집단에 속한 자, ②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자 또는 법인이 여기에 속한다.



의 책임을 투자자금 한도로 제한하는 독립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에서는, 만일 러시아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초기단계라면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최소 자본의 규모가 작아 설립이 용이하다.
- ② 기관구성,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회사운영이 가능하다.
- ③ 정관에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사채를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운영상 부담하는 부담이 적다.

다만, 주주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하므로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의 규모를 키우거나 지분의 유통을 통하여 자본을 회수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참고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아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유한회사	주식회사
명칭	'지분'	'주식'
출자자의 책임과 지분양도	유한책임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제3자에 지분양도 가능	유한책임 공개주식회사는 자유로운 주식 거래 가능
출자자의 수	50인 미만	제한 없음
최저자본금	1만 루블 초과, 회사 등기 전 50% 이상의 납입 강제	최저임금의 1000배 초과 (즉 10만 루블 초과) 회사 설립 등기 전 50% 이상의 납입 강제
설립문서	(설립계약서) 정관	정관
주식 발행에 따른 책임		증권세 납부 의무, 증권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

그러나 러시아 등 현지 진출 경험이 풍부하고 지분시장을 이용한 투자유치 등에 관심이 있다면, 공개 주식회사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공개주식회사는 투자유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 법상 여러 가지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회사 운영상의 부담이 있으므로 폐쇄형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참고로 공개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를 비교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sup>12)</sup>

〈표 3〉 공개형 주식회사와 폐쇄형 주식회사 비교

	공개주식회사(OAO)	폐쇄형 (ZAO)
정의	주주가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주식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한이 있음
발행주식 공모	가능	불가능
주주의 우선권	신주우선인수권	신주우선인수권, 우선매수청구권
최저자본금	법정 최저임금의 1,000배	법정 최저임금의 100배
재무제표의 공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의무	공시의무 없음
주주 수의 제한	없음	50명 이하.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공개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여야 함. 이에 위반하면 법정 청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회사와 특성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러시아 내에서도 폐쇄형 주식회사 형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설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4.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과 관련한 법적 쟁점

##### 1) 지사 개설 시 유의사항

지사(Филиал)는 본사의 주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면서, 본사 법인의 영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내에서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대표사무소(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는 연락사무소의 개념으로 현지 영업망을 관리하고 시장조사 및 마케팅활동 등 보조적인 활동만 가능한 것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구별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법인의 지사를 현지에 개설하는 경우 지사는 본 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본 지점 간 과실송금 등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 현지에서 건

12) Молотников А.Е., Закон и бизнес, ООО Питер Пресс, 2008, p.28~29.

설업, 장비관련 설치가 필요한 업종 등에 종사할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건설협회 및 향후 면허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본사의 건설 실적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사를 개설하여 현지 진출을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다만, 지사 개설은 현지 법인 설립 시 보다 더 까다로운 행정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개설 소요기간도 법적 심사기간만 21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현지 법인 개설 시 5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심사 기간도 길고,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지 법인과는 달리 러시아에서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러시아법의 적용이 최소화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개설할 경우 외환 거래 등의 업무가 수반되므로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지사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간혹 일부 현지 진출 희망 업체들은 해외거래 실적부재 등 해외 지사 개설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사 개설은 현지법인의 설립과는 달리 자본금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지사의 장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2) 자회사와 지점의 구별

한편, 자회사는 간혹 지점 또는 지사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자회사는 출자구조상 한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러시아 법률상 외국법인이 아닌 러시아 현지법인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법인이 100% 출자하여 러시아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합작회사(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출자자와 러시아 현지 출자자가 합작투자를 통하여 러시아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현지법인을 의미한다. 현지법인으로 간주되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러시아 조세당국으로부터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통제를 받게 되며, 해외 영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인의 소득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해외 영업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과세목적상 러시아 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현지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 이전가격문제,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과세, 수입배당금에 대한 한-러 조세조약상의 간접/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이자에 대한 과세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지사의 경우 러시아내에서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므로, 해외 영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한

국 본사의 소득에서 공제되고, 해외 영업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본지점간 이체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III. 글을 맺으며

러시아연방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보통은 사원간 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 또는 설립문서인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정형화된 형태로 유한회사법 및 주식회사법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위하여 임의로 새로운 규정을 둘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영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과는 매우 상반된 경우로서 러시아법에서는 행정적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사적 자치에 입각한 계약서 작성 실무가 빈약하고 사적관계를 규율 하는 제도 등이 경험적 축적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은 러시아 유한회사법이나 주식회사법뿐만이 아니라 민법을 비롯한 사법체계의 매우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법들의 잦은 개정은 사법체계전반에 걸쳐 행정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악영향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러시아에서는 거의 모든 문서가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러시아법의 정형화된 특성과 잦은 법개정에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들은 반드시 공증을 필하고, 작성 시에도 법개정 사항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지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 문헌〉

법제처, “러시아 기업제도에 관한 고찰”, 2008.

법제처, “러시아연방에서의 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법제연구”, 2005.

##### 〈러시아 문헌〉

Молотников А.Е., “Закон и бизнес”, ООО Питер Пресс, 2008.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на период до 2008г <http://www.economy.gov.ru>.